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근거 마련 >

■ 이강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467호)

2025. 2.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명 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근거 마련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이강일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2024. 9. 30.
3. 회 부 일: 2024. 10.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그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이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통합관제센터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를 대신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범죄의 수사 등에 긴급히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또는 위탁받아 설치·운영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통합관제센터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관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결격사유 및 그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강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5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근거 마련

□ 개정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하여 관제하는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관제센터 설립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성폭력범죄자 등의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수행을 금지하고, 관제업무 종사자에 대한 정보보호 교육 등의 실시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5조의3(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아 설치·운영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하여 관제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통합관제센터”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통합관제센터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관제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현행	개정안
	2. <u>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 3. <u>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 4. <u>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u> 5.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u>성폭력범죄</u>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u>죄</u>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u>스토킹범죄</u> 6.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u>실형(벌금형을 제외한다)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u> 나. <u>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u> 다. <u>벌금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u> 라. <u>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u>

현 행	개 정 안
	<u>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u> <u>④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관제센터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의 보호와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u> <u>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¹⁾ 통합관제센터는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CCTV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해 용도별·지역별로 개별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관리적으로 통합하여 운영·관제하기 위한 통합체제시스템 운영조직임.

○ 2002년 범죄예방 목적의 공공 CCTV가 최초로 설치된 이래 공공 CCTV가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목적별, 기관별, 부서별로 개별 설치·운영하는 CCTV 관제업무의 비효율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2007년 천안시·아산시가 협약을 체결하여 344대의 CCTV를 통합 관제하기 위하여 천안·아산 통합관제센터가 전국 최초로 개소한 이후 중앙정부에서 2011년 통합관제센터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관제센터 구축사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7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據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업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 12월 기준으로 현재 운영 중인 통합 관제센터는 216개소임.

< 지방자치단체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 >

(단위: 개소)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개소수	25	16	4	11	1	1	5	1	31
시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계
개소수	18	11	15	14	22	22	18	1	216

주: 2023. 12.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 통합관제센터가 운영되면서 시·군·구 내 여러 부서에서 각자 분담·관리하던 CCTV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교통, 범죄예방, 불법주정차 관리, 재난 감시 등을 통합 대응할 수 있게 되었고, CCTV 설치를 사전 조정하여 무분별한 중복 설치를 방지하는 등 체계적 관리를 가능해졌음.

□ 그러나 CCTV를 통해 촬영·저장된 방대한 양의 영상정보가 통합관제센터에 집중·수집·이용될 경우 불특정다수인의 초상권, 자기정보통제권,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될 우려가 크며²⁾, 특히 법률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³⁾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2) “가족·지인 차량 동선 무단 조회 거창관제센터 직원 무더기 적발”, 연합뉴스, 2024. 9. 4.
(<https://www.yna.co.kr/view/AKR202409040909000052?input=1195m>)

□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다 엄격하게 규율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2025. 1. 7.)되어 2025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개정안의 취지가 이미 타 법률에 일부 반영⁴⁾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안 제25조의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5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 센터 운영 근거 마련 -설치 주체: 지방자치단체의 장 -통합관제센터의 목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통합관제 대상: 직접 또는 위탁운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련 의견수렴 의무화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종사자 결격사유 명시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종사자 교육 의무화	-영상정보처리기기(고정형 및 이동형)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설치 주체: 지방자치단체의 장 -통합관제센터의 목적: 재난 및 사고의 예방·대비·대응 -통합관제 대상: 고정형 및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관할지역 내 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포함 가능) -통합관제센터의 개인정보처리 처리 및 활용 원칙 제시(필요최소한, 목적 내) -인공지능 기술 등 활용 가능 -재난안전상황실과 재난관리정보 공유 등

3)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정, 폐쇄회로 텔레비전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2018. 6. 29.

4) 공공기관 CCTV는 크게 범죄예방, 시설안전·관리 및 화재 예방, 교통단속, 교통정보의 수집 및 제공 등의

□ 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관 사무인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최근 CCTV의 발전으로 민간에서도 관제시설을 운영하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를 포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조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04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데,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통합관제센터 운영의 목적을 재난 및 사고의 예방에 한정하고 있음.